

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토양정화업의 등록·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4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토양정화업의 등록·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·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·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·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의4제1항·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·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시·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자는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,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·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나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0년 7월 14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환경부장관 조명래

●대통령령 제30849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 대상란 중 “제한조치로”를 “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

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제조·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7월 14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 이재갑
고용노동부장관

●**대통령령 제30850호**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”를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6조제1항 중 “직업능력개발계좌”를 “직업능력개발계좌(이하 “직업능력개발계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법 제18조제2항”을 “법 제18조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 조”를 “이 조 및 제22조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7호 중 “능력개발 사업”을 “능력개발사업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4제3항제3호 중 “사업주단체·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”를 “사업주단체등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법 제19조제2항·제24조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(이하 이 조에서 “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라 한다)되어”를 “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되어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1호나목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”을 “「청소년 기본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성명”을 “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 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34조제1항제4호 본문 중 “수익용 기본재산”을 “수익용기본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39조제2항제2호 중 “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”을 “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”으로 한다.